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1권 158p 핵심만 콕 & 법령 번호 : 08	해설	핵심만 콕 ·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호 및 제6의3호에 벌금형 규정이 있지만,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“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”라고만 하면 임용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. 법령 결격사유(국가공무원법 제33조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(중략) 6의3. 형법 제303조(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)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핵심만 콕 ·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에 벌금형 규정이 있지만,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“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”라고만 하면 임용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. 법령 결격사유(국가공무원법 제33조) <개정 2018. 10. 16.>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(중략)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권 192p ㉔ 검측대상	개념, 공식-설명	㉔ 검측대상 기념식장 구역을 세분화하여 책임구역을 설정하고, 외부, 내부, 소방, 직시고지 등에 대한 반복적인 검측과 출입자에 대한 통로를 단일화하여 반입물품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.	㉔ 검측대상 운동장 구역을 세분화하여 책임구역을 설정하고, 외부, 내부, 소방, 직시고지 등에 대한 반복적인 검측과 출입자에 대한 통로를 단일화하여 반입물품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.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